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. 3. 27 선고 2017가단497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

피고1. A

2. B

3. C

4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3. 2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9. 1. 25. 접수 제15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이수현

별지